

청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14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이종훈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621,123원 및 그 중 313,138,353원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8.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2019. 8. 27. 접수 제895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순번 1번 신용보증약정을 '제1약정', 순번 2번 신용보증약정을 '제2약정', 순번 3번 신용보증약정을 '제3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사내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1	2014. 7. 30.	E	90,000,000	2015. 7. 30.	100,000,000

2	2015. 7. 6.	F	127,500,000	2016. 7. 6.	150,000,000
3	2016. 3. 31.	G	463,500,000	2024. 3. 31.	515,000,000

2) 제1약정은 보증기간이 2015. 7. 22.경 2016. 7. 29.로, 2016. 7. 5.경 2017. 7. 28.로, 2017. 6. 29.경 2018. 7. 27.로, 2018. 7. 3.경 2019. 7. 26.로, 2019. 7. 3.경 2020. 7. 24.로 각 변경되었고, 제2약정은 보증기간이 2016. 7. 5.경 2017. 7. 6.로, 2017. 6. 29.경 2018. 7. 6.로, 2018. 7. 3.경 2019. 7. 5.로, 2019. 7. 3.경 2020. 7. 3.로 각 변경되었으며, 제3약정은 보증금액이 92,7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은 ‘피고 A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피고 B)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피고 A의 채권자 피지피 주식회사는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 242,004,880원에 대하여 피소 A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H 주택축물제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카단51232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8. 9.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23. 피고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98,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8.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1) D은행은 2019. 10. 8.경 원고에게 사고발생일자 2019. 10. 1., 사고원인 사업운영 부진에 따른 원금연체를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2) D은행은 2019. 11. 28. I 주식회사(이하 'I 회사'라고 한다)와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J 유한회사(이하 'J 회사'라고 한다)가 I 회사의 위 자산양도 계약상 권리 · 의무 및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2019. 12. 26. D은행, J 회사, I 회사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D은행은 2019. 12. 27. 위 자산양수도계약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이 J 회사에 양도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A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20. 2. 6. J 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합계 314,463,733원(제1약정 91,282,654원 + 제2약정 129,652,723원 + 제3약정 93,528,35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제1약정 대위변제금 중 1,325,380원을 회수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비용으로 합계 7,482,7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3 내지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6.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314,463,73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변제 당일 제1약정의 대위변제금 중 일부인 1,325,380원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7,482,77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20,621,123원(= 314,463,733원 - 1,325,380원 + 7,482,77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13,138,353원(= 314,463,733원 - 1,325,38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20. 2. 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선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2020. 2. 6.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이 확정적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늦어도 2019. 8. 9.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에 대하여 대출금 상당의 보증금을 사전에 구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40일 후인 2019. 10. 1.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2.항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사해행위 소송에서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2) 판단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 및 K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8. 23. 당시 피고 B는 적극재산으로 합계 631,289,24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581,589,040원 + 청주시 흥덕구 L 전 638㎡의 가액 49,700,200원(= 638㎡ × 77,900원)]을, 소극재산으로 합계 17억 667만 원(주식회사 D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2,000만 원 + K조합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983만 원 + K조합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합계 3억 7,300만 원 + 주식회사 M에 대한 보증채무 7,600만 원 +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채무 5억 2,900만 원 +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3억 1,020만 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 3억 8,864만 원) 이상을 보유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기존 채무의 담보제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B와 사이에 2017. 9. 13.경부터 2018. 4. 2. 사이에 발생한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조경진, 판사 조수민

별 지 목 록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293㎡

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167.23㎡

2층 160.97㎡

3층 167.23㎡